

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등록 또는 신고”를 “등록 또는 신고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2조제1항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2조제3항, 「한국해운조합법」 제6조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등록 및 신고를 적용 배제 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별도로 정하는 시작일(이하 ‘기준기간 시작일’이라 한다)부터 종료일(이하 ‘기준기간 종료일’이라 한다)까지의”를 “적용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자동차용”을 “자동차용 및 선박용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금액”을 “금액을 원칙”으로 하고, 같은 항의 각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,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,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,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

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보통휘발유, 자동차용 경유, 실내 등유”를 “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적용시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, 국내석유 제품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석유판매업자”란 법 제10조에 따라 <u>등록 또는 신고</u> 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	5. ----- ----- <u>등록 또는 신고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2조제1항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2조제3항, 「한국해운조합법」 제6조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등록 및 신고를 적용 배제 받은 자를 포함한다</u>)-
6. ·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8. “기준기간”이란 최고액을 산정하기 위해 <u>별도로 정하는 시작일(이하 ‘기준기간 시작일’이라 한다)부터 종료일(이하 ‘기준기간 종료일’이라 한다)까지의 기간</u> 을 말한다.	8. ----- ----- <u>적용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대상 석유제품 및 가격) ① 법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	제3조(대상 석유제품 및 가격) ① ----- ----- -----.

만,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고액 지정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자동차용 경우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산정 방식) ①·② (생략)

③ 최고액을 조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<신설>

제8조(수출제한)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는 2026년 매월 수출하는 보통휘발유, 자동차용 경유, 실내 등유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이 2025년 같은 기간 수출한 물량의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자동차용 및 선박용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산정 방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금액을 원칙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.

제8조(수출제한) -----

-----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-----

<p>100%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하여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